#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기관의장
람	



제 616호 2018. 9.13.(목)

고 시	
제2018 - 133호	도로명주소 고시1
제2018 - 134호	『냉천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4
제2018 - 135호	『가천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7
제2018 - 142호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 시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10
제2018 - 143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19
공 고	
제2018 - 991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5
제2018 - 992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0
제2018 - 993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5
제2018 - 998호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0
제2018 - 1000호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5
제2018 - 101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54
제2018 - 1020호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5
제2018 - 1026호	. 재난관리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66
제2018 - 103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공고 … 70
제2018 - 1040호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71
제2018 - 1041호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공사완료 공고 77
제2018 - 1047호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시업인정 의견청취 공고 · 79
-3 -3	
회람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8 - 133호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3일

###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487 외 30

종전:	주소	도로	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	로명주소.	변경후 도	로명주소	도로명주	소 변경일	변경사유		
(별도열람)									
<b>こ</b>	로명주소		도로명주	소 폐지일	폐지사유				
		•	( 별 도	열 람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27	총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황리 32, 47-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539	2009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현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3, 10-5, 10-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310	20090702	남해군의 동부대로
m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48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담해대로 3896	2009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4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문의리 23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508	20090427	남해본섬과 장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접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04-6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62-9	20090427	내산은 고속도로 건설 등 나라발전에 앞장선 최치환 선생이 출생한 곳으로 그의 호를 따금암로라 함
9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84-4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독일로 33	20090427	독일에 파건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교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독일마을이 위치한 도로임을 반영
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29-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59	20090427	남해읍에서 남해의 제2산이라 불리는 망운산으로 통하는 길임을 반영
ω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흥현리 611-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무지개로 104	20090427	무지개 모양의 고개인 무지개골이 위치한 길임을 반영
6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66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509	20090427	미조리(미아산 아래에 있는 마을)에서 송정리(소나무 숲 위쪽에 있는 마을에 정자가 있었던 곳)로 연결되는 도로임
10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진목리 1184-5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176-193	20090427	설천면 소재지를 지나는 도로임을 반영
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리 62-8, 62-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율도로 99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섬의 모양이 밤같이 생긴 데에서 유래
1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367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질개로 38	20090427	도산의 순우리말로 질그릇을 만들었던 곳을 의미함
13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40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 159-8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마을 인근이 초원이었음을 의미함
1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729-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현로 177-4	2009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예전에는 평고개리라고도 하였음
15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중천리 172-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화방로 366	20090427	보리암, 용문사와 함께 남해 3대 사찰인 화방사가 위치하는 길임을 반영
1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0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336-127	2009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17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대리 산200-6, 산200-7, 산200-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730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광천리 29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353	2009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19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덕월리 868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268번길 28-19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1723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2979번길 75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7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포상리 1709-2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서대로3214번길 1	2009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1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252-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2363번길 5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3,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심천리 7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대로2984번길 68-60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9,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265-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남해대로3816번질 41-5	2009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8,1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10-3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84번질 36	20090427	동부대료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당저리 410-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2084번길 36-1	2009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8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558-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나길 14-53	20100915	망운료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2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577.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1305번길 84	20091023	서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0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9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174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초음로45번길 18-6	20090427	초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0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사리 636-4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76번길 20-11	20090427	탑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151-8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410번길 50-30	20090427	홍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8 - 134호

### 『냉천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남해군 창선면 냉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 제39조, 「농어촌정 비법 시행령」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냉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3. 사업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냉천 마을
- 4. 사 업 개 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찬새미 치유회관 : 마을회관 리모델링(A=46m²), 이장실 증축 (A=12m²)
    - 찬새미 공동족욕탕 : 우물정비(화강석 판석포장 1식, 파고라 1식)
    - 찬새미 마실 산책로 : 칼라콘크리트 포장(A=448m²)
  - 역량강화사업
    - 홍보, 마케팅 및 주민교육
- 5. 총 사 업 비 : 494백만 원(국비 346. 지방비 148)
- 6. 사 업 기 간 : 2017년 ~ 2019년

-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 8. 관련자료 열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세부 사업 내역 1부. 끝.

# 기 능 별 사 업 내 역

(단위 : 천원)

				 총 괄	 계	(원귀:전원)
구 분	예비계		기본 및 시행	]계획(B)	중.감(△) (B-A)	중감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496,000		494,000	△2,000	최종사업비 감액 조정
o 공 사 비		446,000		430,063	△15,937	
◇기초생활기반확충		400,000		384,063	△15,937	
찬새미 치유회 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280,000	마을회관 리모델링	247,621	△32,379	세부설계결과 반영
찬새미 공동족 우물정비 1 욕탕 식			우물정비 1 식	44,742	4,742	세부설계결과 반영
찬새미 마실산 책로	산책로 조 성 1식	80,000	산책로 조성 1식	91,700	11,700	세부설계결과 반영
o 지역역량강화 (S/W)		46,000		46,000	-	
-독거노인 상담	1식	12,000	1식	12,000	-	
-심리치유 음악감상	1식	12,000	1식	12,000	-	
-치유마을 선진지견학	1식	22,000	1식	22,000	_	
2) 부대경비		50,000		63,937	13,937	
-측량설계비등	1식	50,000	1식	63,937	13,937	

남해군 고시 제2018 - 135호

### 『가천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

남해군 남면 가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8조 및 제39조, 「농어촌정 비법 시행령」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가천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3. 사업의 위치 : 남해군 남면 홍현리 가천 마을
- 4. 사 업 개 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회관 리모델링 : 마을회관 2층 증축, A=33.8m²
    - 다랭이 음악당 : 야외무대(A=34m²). 연식(L=21.95m)
  - 다랭이 전시관 : 디자인 거리 전시관 조성 1식
  - CCTV 설치 : 12개소 설치
  - 역량강화사업
    - 홍보, 마케팅 및 주민교육
- 5. 총 사 업 비 : 466백만 원(국비 326, 지방비 140)
- 6. 사 업 기 간 : 2017년 ~ 2019년

-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 8. 관련자료 열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지역개발팀, 055-860-3613)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세부사업내역 1부. 끝.

# 기 능 별 사 업 내 역

(단위 : 천원)

				총 괄	계	
구 분	예비계	획(A)	기본 및 시	행계획(B)	중.감(△) (B-A)	중감사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2 11)	
합 계		466,000		466,000	-	
o 공 사 비		416,000		388,606	△14,606	
1) 공사비 (순 공사바자재대)		374,000		346,606	△27,394	
◊ 기초생활기반		374,000		346,606	△27,394	
-미을회관리모델링		200,000		189,816	△10,184	세부설계 결과반영
-다랭이음악당		20,000		36,440	16,440	세부설계 결과반영
-다랭이전시관		78,000		40,050	△37,950	세부설계 결과반영
-CCTV		66,000		80,300	14,300	세부설계 결과반영
-스마트방송시스템		10,000		_	△10,000	삭제
o 지역역량강화 (S/W)		42,000		42,000	_	
○ 소프트웨어		42,000		42,000	_	
-교육부분		24,000		24,000		
-홍보부분		18,000		18,000		
o 부대경비		50,000		77,394	27,394	
-측량설계비등		50,000		77,394	27,394	설계비 및 공감비 재산정에 의한 중액

남해군 고시 제2018 - 142호

#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남해·하동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9조 4항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3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4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 명칭 :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전체 : 1,940,284.5㎡, 대중제 골프장 1,331,102.0㎡, 휴양콘도미니엄 609,182.5㎡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구분	기정	변경
성명	· ㈜한섬피앤디 대표이사 강경수, 정형진	· ㈜사우스케이프 대표이사 정형진
78.8	㈜사우스케이프 대표이사 강경수	· [마시푸드계이트 대표이자 경영전
ス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459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545
一个在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545	· '영영보고 날에진 '영'전한 등'전도 1949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10년 7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6. 사업의 목표 및 개요

- 사업의 목표 : 골프리조트를 포함한 종합 레저 휴양 관광지의 조성으로 4계절 연중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주 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사업개요 : 대중제 골프장업 18홀 1,331,102.0㎡, 휴양콘도미니엄 609,182.5㎡

#### 7. 주요시설 변경내용

-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 공동시행자인 ㈜한섬피앤디와 ㈜사우 스케이프가 합병되어 ㈜사우스케이프 대표이사 정형진 단일시행자로 변경되었 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하고
- 체육시설(골프장)의 폰드 확장공사가 완료되어 지적확정측량 결과 지번간의 면 적변경(지적분할)이 발생되어 군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변 경)인가를 변경하고자 함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1
- 9. 법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10. 자금조달계획서

(단위:억원)

	구	- 분	착공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사	-업비	190	50	121	305	425	350	350	290	67	67	67	69	2,351
3	회	1차 (2013)	1		_		-	_	260	_	1	1	-		260
	원 권 분 양	2차 (2015)	_	_	_	_	_	_	610	_	_	_	_	_	610
C	्रे	3차 (2020)	_	_	_	_	_	_	_	_	580	580	580	580	2,320
		계	-190	-50	-121	-305	-425	-350	520	-290	512	512	512	514	839
	3	구계	-190	-240	-361	-666	-1,091	-1,441	-921	-1,211	-699	-187	325	839	_

### 11. 연차별 투자계획서

(단위:억원)

구 분	착공전	착공1차년 (10.07~13.04)	착공2차년 (13.05~14.12)	착공3차년 (14.01~20.12)	계
사 업 비	80.00	1,702.65	815.66	1,327.69	3,926.00
인허가 용역	18.00	_	_	_	18.00
공 사 비	_	1,702.65	815.66	1,327.69	3,846.00
기 타	62.00	_	_	_	62.00

<붙임>

### 남해 사우스케이프 토지조서(체육시설)

VJ 20)	소케크	الدارج	a) II		면적(m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ul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중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비고
	Ÿ	<b>과</b>		1,331,102.0	1,331,102.0	_					
1	진동리	1334	임	498.6	498.6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	진동리	1335	임	80.1	80.1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	진동리	1336	임	174.5	174.5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	진동리	1337	임	4,047.8	4,047.8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2265 /34116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1851 /34116
5	진동리	1338	체	15,424.0	15,424.0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6	진동리	1339	임	1,058.0	1,058.0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7	진동리	1340	먑	14,163.0	14,163.0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8	진동리	1341	체	6,962.6	6,962.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9	진동리	1341-1	임	3,866.4	3,866.4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0	진동리	1342	임	18,306.1	18,306.1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1	진동리	1343	임	646.9	646.9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2	진동리	1344	임	3,956.2	3,956.2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1/2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1/2
13	진동리	1345	임	53,520.9	53,520.9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4	진동리	1345-1	체	193.3	193.3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5	진동리	1345-2	체	255.0	255.0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6	진동리	1345-3	체	5,182.6	5,182.6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7	진동리	1345-4	임	1,812.8	1,812.8	_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8	진동리	1346	체	390,568.3	390,568.3	_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9	진동리	1347	임	22,958.1	22,958.1	_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2265 /34116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1851 /34116
20	진동리	1348	임	3,587.5	3,587.5	_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1	진동리	1349	임	38.9	38.9	_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2	진동리	1350	임	5,125.9	5,125.9	_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3	진동리	1351	체	10,710.4	10,710.4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4	진동리	1352	체	11,668.0	11,668.0	_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5	진동리	1353	임	97,159.8	97,159.8	_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6	진동리	1354	체	22,766.5	22,766.5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7	진동리	1355	체	6,124.6	6,124.6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8	진동리	1356	임	21,847.1	21,847.1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9	진동리	1357	체	249,388.1	249,388.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권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당초	변경	중감	성명	주소	성명	주소	- 비고
30	진동리	1358	임	12,159.1	12,159.1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1	진동리	1359	임	2,553.5	2,553.5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2322 /2789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467 /2789
32	진동리	1360	임	11,756.3	11,756.3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3	진동리	1361	체	85,423.5	85,423.5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4	진동리	1362	임	10,172.9	10,172.9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5	진동리	1363	임	9,315.8	9,315.8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6	진동리	1364	임	9,615.3	9,615.3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7	진동리	1365	임	3,484.5	3,484.5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8	진동리	1366	임	13,132.2	13,132.2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9	진동리	1367	임	857.2	857.2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0	진동리	1368	임	2,810.7	2,810.7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1	진동리	1369	임	1,698.6	1,698.6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2	진동리	1370	체	70,707.1	70,707.1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3	진동리	1371	임	31,106.7	31,106.7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361 /34683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322 /34683
44	진동리	1371-1	체	-	2,819.0	증)2,81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371에서 분할
45	진동리	1372	체	9,455.1	6,636.1	감)2,81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6	진동리	1373	임	3,059.2	3,059.2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7	진동리	1374	임	38,211.0	38,211.0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8	진동리	1375	임	8,038.5	8,038.5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9	진동리	1376	도	8,056.9	8,056.9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50	진동리	1377	도	544.0	544.0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51	진동리	1378	도	229.5	229.5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361 /34683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322 /34683
52	진동리	1379	도	122.2	122.2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34361 /34683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322 /34683
53	진동리	1380	도	409.1	409.1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702000
54	진동리	1381	도	384.3	384.3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55	진동리	1382	도	18,473.9	18,473.9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56	진동리	1383	도	2,489.6	2,489.6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지분1999 /6176
							정재봉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02 연세리버테라스 1001			지분4177 /6176
57	진동리	1384	도	4,224.7	4,224.7	-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70110
58	진동리	1385	도	518.6	518.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산단 선정의 선정기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남해 사우스케이프 토지조서(관광휴양시설)

### ■ 휴양콘도미니엄 1단지

мы	소케키	ઝો મ	1	지목	면적	(m²)		소유자	소유권	변이외의권리	비고
12.6	소재지	지번	<u>!</u>	시축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112
		합계			99,995.0	99,995.0					
1	진동리	254	1	전	413.0	41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	진동리	255		전	498.0	498.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	진동리	255	1	전	100.0	100.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	진동리	294	2	显	30.0	30.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5	진동리	294	3	전	12.0	12.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6	진동리	294	4	임	730.0	730.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7	진동리	산234		임	496.0	496.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8	진동리	산235	11	임	1,229.0	1,22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9	진동리	산235	13	임	1,729.0	1,72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0	진동리	산235	14	임	3,119.0	3,11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1	진동리	산235	15	임	598.0	598.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2	진동리	산235	20	임	10,444.0	10,444.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3	진동리	산235	27	임	535.0	535.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4	진동리	산235	28	임	805.0	805.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5	진동리	산235	29	임	58,175.0	58,175.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6	진동리	산235	32	임	20,499.0	20,49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7	진동리	산236		임	186.0	186.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8	진동리	산238		임	397.0	397.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 휴양콘도미니엄 2단지

Cd 1H	소재지	지번	1	지목	면적	(m²)		소유자	소유	권이외의권리	비고
12.52	. 241	শহ	<u>.</u>	715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HIT
		합계			75,057.0	75,057.0					
1	진동리	산241		임	1,289.0	1,28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	진동리	산243	1	임	73,768.0	73,768.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 휴양콘도미니엄 3단지

cd HJ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³)		소유자	소유	<b>구권이외의권리</b>	비고
12.51	조세시	시킨	시독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H1.11€
		합계		32,293.7	32,293.7					
1	진동리	1332	대	22,909.7	22,909.7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	진동리	1333	임	9,384.0	9,384.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 휴양콘도미니엄 4단지

ан	소재지	지병	บ	지목	면적(	m²)		소유자	소유	권이외의권리	비고
판현	조세시	<b>△1</b> ₹	<u>'1</u>	시독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HT
		합계			48,893.0	48,893.0					
1	진동리	산321	2	임	2,529.0	2,52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	진동리	산334	2	임	5,950.0	5,950.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	진동리	산334	7	임	8,336.0	8,336.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	진동리	산334	9	임	9,679.0	9,67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5	진동리	산334	14	임	6,097.0	6,097.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6	진동리	산334	16	임	2,309.0	2,30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7	진동리	산335		임	793.0	79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8	진동리	산336		임	13,200.0	13,200.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 휴양콘도미니엄 5단지

cd til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²)		소유자	소유	권이외의권리	비고
15.67	조세시	시킨	기도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H1-12
		합계		73,163.8	73,163.8					
1	진동리	1386	임	3,038.1	3,038.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	진동리	1387	대	3,365.6	3,365.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	진동리	1388	임	3,071.4	3,071.4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	진동리	1389	체	179.2	179.2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5	진동리	1390	임	6,543.0	6,54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6	진동리	1391	임	521.7	521.7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7	진동리	1392	대	2,962.2	2,962.2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8	진동리	1393	임	5,688.1	5,688.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9	진동리	1394	임	1,179.8	1,179.8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0	진동리	1395	대	7,312.2	7,312.2	제이엘유나 이트 외 5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신갈동)			

W 231	2 -11 -1	જો પ્રો	-) <del>-</del>	면적(	(m²)		소유자	소유	권이외의권리	w) -
선턴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11	진동리	1396	임	2,535.4	2,535.4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2	진동리	1397	대	5,404.5	5,404.5	지에스홈쇼핑 외 6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75(문래동6가)			
13	진동리	1398	임	484.1	484.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4	진동리	1399	임	21,664.8	21,664.8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5	진동리	1400	임	204.4	204.4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6	진동리	1401	도	1,167.5	1,167.5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7	진동리	1402	도	3,870.0	3,870.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8	진동리	1403	도	2,933.6	2,933.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9	진동리	1404	도	293.3	293.3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0	진동리	1405	잡	174.3	174.3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1	진동리	1406	잡	124.9	124.9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2	진동리	1407	잡	399.6	399.6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3	진동리	1408	잡	46.1	46.1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 휴양콘도미니엄 6단지

연번	소재지	지번	1	기목	면적	(m²)		소유자	소유	권이외의권리	비고
122	2414	পাহ	1	715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I.T.
	합:	계			17,423.0	17,423.0					
1	진동리	산243	3	임	17,423.0	17,42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 휴양콘도미니엄 7단지

M M	2 -11 -1	) 12	a	-1 E	면적	(m³)		소유자	소유	권이외의권리	שו –
컨텐	소재지	지병	<u>1</u>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	합계			262,357.0	216,962.0					
1	진동리	18	2	양	217.0	217.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	진동리	19	1	잡	365.0	365.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	진동리	산334	17	임	5,776.0	5,776.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4	진동리	산334	18	임	46.0	46.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5	진동리	산334	19	임	372.0	372.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6	진동리	산334	21	임	101.0	101.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7	진동리	산336	3	임	5,839.0	5,83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8	진동리	산340	2	임	15,256.0	15,256.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Al ui	2111	<b>₩</b> ) ••	1	-) u	면적	(m²)		소유자	소유국	권이외의권리	w)
연번	소재지	지병	<u>H</u>	지목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고
9	진동리	산340	4	임	6,988.0	6,988.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0	진동리	산340	5	임	6,336.0	6,336.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1	진동리	산340	6	임	5,691.0	5,691.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2	진동리	산340	9	임	8,862.0	8,862.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3	진동리	산340	10	임	9,864.0	9,864.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4	진동리	산340	11	임	3,306.0	3,306.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5	진동리	산340	13	임	1,653.0	1,65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6	진동리	산340	14	임	1,653.0	1,65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7	진동리	산340	15	임	1,653.0	1,65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8	진동리	산340	16	임	1,653.0	1,65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19	진동리	산340	17	임	1,653.0	1,65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0	진동리	산340	18	임	1,435.0	1,435.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1	진동리	산340	19	임	1,653.0	1,65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2	진동리	산340	20	임	4,501.0	4,501.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3	진동리	산340	21	임	5,190.0	5,190.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4	진동리	산340	22	임	7,491.0	7,491.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5	진동리	산341		임	496.0	496.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6	진동리	산342		임	694.0	694.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7	진동리	산343	1	임	28,964.0	28,964.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8	진동리	산343	2	임	28,490.0	26,027.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9	진동리	산343	3	임	62,854.0	19,922.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0	진동리	산343	4	임	26,329.0	26,329.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1	진동리	산343	5	임	2,975.0	2,975.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2	진동리	산343	6	임	1,983.0	1,98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3	진동리	산343	7	임	992.0	992.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34	진동리	산345	1	임	11,026.0	11,026.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 ■ 휴양콘도미니엄 8단지

ан	入케フ	7) H	번 지목		면조	(m²)		소유자	소유	권이외의권리	비고
2.5			시독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비포	
		합계			91,344.0	45,395.0					
1	진동리	산343	2	임	28,490.0	2,463.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2	진동리	산343	3	임	62,854.0	42,932.0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321			

남해군 고시 제2018 - 143호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고시

남해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제134조 제2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 남 해 군 수

- I. 세입·세출결산
- 1. 총 괄

(단위 : 원)

	회계	빌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힙	+		계	547,890,958,870	547,278,244,516	359,476,070,005	187,802,174,511
일	반	회	계	472,225,940,280	472,195,342,353	330,420,917,225	141,774,425,128
=	· 별	회	계	75,665,018,590	75,082,902,163	29,055,152,780	46,027,749,383
	상 수 도	특 별	회 계	12,562,396,280	12,126,907,288	10,894,540,440	1,232,366,848
	의 료 급	여 :	기 금	704,144,000	675,374,541	638,636,950	36,737,564
	자 활 및 생	활 안 정	! 기 금	2,292,803,000	2,266,851,299	144,451,560	2,122,399,739
	발 전 소 지 원	주 변 사	지 역 업	677,028,000	661,438,388	244,815,800	416,622,588
	환 경 기	초	시 설	24,029,085,640	23,951,538,175	16,901,899,730	7,049,638,445
	장기미집행 <u>!</u> 지	도시계 획 보	시설대 상	403,103,670	404,326,880	230,808,300	173,518,580
	청 사	건	립	34,996,458,000	34,996,465,619		34,996,465,619

### 2. 세입결산

(단위 : 원)

회	7	붸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547,890,958,870	548,891,768,523	547,278,244,516	1,613,524,007
일	반	회	계	472,225,940,280	473,747,220,950	472,195,342,353	1,551,878,597
특	별	회	계	75,665,018,590	75,144,547,573	75,082,902,163	61,645,410
상		수	도	12,562,396,280	12,155,949,148	12,126,907,288	29,041,860
의	료 급	<del> </del> 여	기 금	704,144,000	675,374,514	675,374,514	
자	활 및 생	활 안 경	정기 금	2,292,803,000	2,266,851,299	2,266,851,299	
발	전 소 주 변	기역지	원 사 업	677,028,000	661,438,388	661,438,388	
환	경 기	초	시 설	24,029,085,640	23,984,141,715	23,951,538,175	32,603,540
장: 지	기미집행	도시계 혹 보	시설대 상	403,103,670	404,326,880	404,326,880	
청	사	건	립	34,996,458,000	34,996,465,629	34,996,465,619	10

### 3. 세출결산

(단위 : 원)

]	회	Л В		예산현액	지 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	합			7	4	547,890,958,870	359,476,070,005	102,446,258,120 (1,072,600,000)	85,968,630,745
9	일	반	회	7	4	472,225,940,280	330,420,917,225	94,516,020,510 (1,072,600,000)	47,289,002,545
	특	별	회	7	4	75,665,018,590	29,055,152,780	7,930,237,610	38,679,628,200
	상		수		도	12,562,396,280	10,894,540,440	1,231,210,550	436,645,290
	의	료 급	여	기	금	704,144,000	638,636,950		65,507,050
	자	활 및 생	활 안	정 기	금	2,292,803,000	144,451,560		2,148,351,440
	발 지	전 소 원	주 변 사	지 <del> </del>	역업	677,028,000	244,815,800	113,440,000	318,772,200
	환	경 기	초	시	설	24,029,085,640	16,901,899,730	6,413,291,690	713,894,220
	장기 지	기미집행!	도시계 보	획시설	대 상	403,103,670	230,808,300	172,295,370	
	청	사	건	!	립	34,996,458,000			34,996,458,000

### 4. 세계잉여금

(단위 : 원)

Ş	1	계		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ē	L			계	187,802,174,511	51,217,448,450	8,519,316,200	41,636,893,470	0.040.051.006	00 507 565 055
	1			AI	(1,072,600,000)	(944,600,000)		(128,000,000)	2,840,951,036	83,587,565,355
					141,774,425,128	50,172,433,080	7,752,229,520	35,518,757,910		
<b>2</b>	į į	· 호	l	계	(1,072,600,000)	(944,600,000)		(128,000,000)	2,785,856,195	45,545,148,423
Ē	· 별	호	1	계	46,027,749,383	1,045,015,370	767,086,680	6,118,135,560	55,094,841	38,042,416,932
	상	수		도	46,027,749,383	1,045,015,370	767,086,680	6,118,135,560	55,094,841	38,042,416,932
-	의로	로급0	月フ	금	1,232,366,848	239,800,000	572,362,180	419,048,370		1,156,298
	자 안	<b>활</b> 및 정 :	생 기	활금	36,737,564					36,737,564
		<u>선</u> 소주 원			2,122,399,739					2,122,399,739
	환경	경기최	호人	실	416,622,588	113,440,000			764,200	302,418,388
		이집 기술시			7,049,638,445	519,480,000	194,724,500	5,699,087,190	54,330,641	582,016,114
	청	사	건	립	173,518,580	172,295,370				1,223,210

Ⅱ.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

1. 예산이용 : 없음

2. 예산전용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예산액	전용금액		
ᅬ	계 건구 예산역	감 액	증 액			
일 반	회 계	19건	2,903,103,000	469,283,000	469,283,000	

3. 예산이체 : 없음

2018년 9월 13일

### Ⅲ.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회	계	건 수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액
일 빈	보회계	10건	1,093,559,000	1,007,772,230	51,006,330	34,780,440

### Ⅳ. 재무제표 결산 요약

(단위 : 원)

~ -	- 4		재정상태		재정운영			
연 5	E 별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 0 1	7 년	1,983,117,430,333	9,074,656,406	1,974,042,773,927	278,642,190,423	362,548,344,355	(83,906,153,912)	
2 0 1	6 년	1,905,116,558,730	8,627,130,303	1,896,489,428,427	244,482,028,366	320,397,078,773	(75,915,050,407)	
증	감	78,000,871,603	447,526,103	77,553,345,500	34,160,162,057	42,151,265,582	(7,991,103,505)	

### V. 채권 결산

(단위 : 원)

ē	티 계 팀	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ē	발 7	계	3,020,811,410	141,581,797	168,892,317	2,993,500,890
9	일 반 회 2	셰	2,750,290,970	141,121,480	161,752,000	2,729,660,450
7	기 타 특 별 회 <i>7</i>	셰	270,520,440	460,317	7,140,317	263,840,440
	자 활 및 생 <sup>1</sup> 안 정 기 :	할 금	84,191,760	460,317	7,140,317	77,511,760
	발전 소 주 변 지 <sup>9</sup> 지 원 사 1	격 겁	186,328,680			186,328,680

VI. 채무 결산 (단위 : 원)

	회	계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발생액	당해연도소멸액	당해연도현재액
계 해당 없음					당 없음		
일	반	회	계	0	0	0	0
특	별	회	계	0	0	0	0
	상 수 도	. 투 별	회 계	0	0	0	0

Ⅷ. 성과보고서 요약

(단위 : 개)

	성과목표							
구분	전 략	정책사업 목표		성과 달성도				
	목표수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130% 이상)	달성	미달성 (100% 미만)		
합 계	18	81	224	28	136	60		

Ⅷ. 기금 결산(단위 : 원)

회계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당해연도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계	12,125,958,401	737,459,200	524,419,130	12,338,998,471
중소기업육성기금	1,425,552,967	122,078,850	14,606,260	1,533,025,557
재 난 관 리 기 금	699,852,813	358,946,750	401,338,120	657,461,443
사 회 복 지 기 금	2,065,248,524	30,782,440	10,500,000	2,085,530,964
양 성 평 등 기 금	828,614,060	112,429,210	12,000,000	929,043,270
식 품 진 홍 기 금	53,363,020	13,142,150	15,000,000	51,505,170
마 늘 명 품 화 기 금	7,053,327,017	100,079,800	70,974,750	7,082,432,067

### IX.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단위 : 원)

	- H	공 :	유 재 산	정 수 물 품			
	구 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47,980,085,079		928	7,124,424,430	
토	지	14,263천 ㎡	172,087,929,662				
건	물	114,876m²	87,641,608,668				
기	타	53,718건	188,250,546,749				

##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8 - 991호

#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안 제5조)
    - 1) 존속기한(2023년 12월 31일) 조항 신설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9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2) 연락처 : 전화 055-860-3153,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전화 055-860-3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성명(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7l. 5l H	구안 내용	찬성	여부		의	견		
기기 일 	গাট পাত	찬성	반대		7	<b>신</b>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 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 (생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8 - 992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조례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경제활동 친화성 (공유재산) 분야 규제지수 완화를 위한 자치법규 자율정비와 관련현행 제도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위 법령 조례 위임 사항 정비(안 제27조)
    - 대부료 부과기준을 시행령 조문에 맞게 변경
  - 나. 공유재산 대부료 분할납부 최대 허용횟수 정비(안 제34조)
    -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완화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9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2) 연락처 : 전화 055-860-3153,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전화 055-860-3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의 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찬성	반대		9	건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 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1.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제2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3조(대부료 등의 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대부료의 요율)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	4		
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			
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		
<u>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u>	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		
	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2. <sup>~</sup>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①〈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의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분할납부는 다음과 같다.	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		
<u>1. 〈생 략〉</u>	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		
2.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납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1.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u>분납</u>	경우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8 - 993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2. 개정이유

인감증명서 요구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인감제출 요구사무를 감축하고자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인감증명서 첨부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규정 추가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9월 20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⑤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53,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전화 055-860-31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규명						
2. 의견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제출자	주 소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 1 * 1 E	11 12 3 11 0	찬성	반대		-1	<u>.                                    </u>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교환) 1. ~ 3. 〈생 략〉 4. 교환승낙서( <u>인감증명서</u> 첨부)	제16조(교환) 1. ~ 3. 〈현행과 같음〉 4. 교환승낙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남해군 공고 제2018 - 998호

#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 2. 개정이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선도적으로 헌신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속 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새마을사업 지원 세부사업 항목 추가(안 제3조)
  - 1) 자원순환 등 환경지키기 사업
  - 2)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 3)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 4. 의견제출
  - 가. 의견 제출기간 : 2018년 9월 19일까지
  -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⑤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3142,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과 교류협력팀(860-3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2. 의견 성명(명칭)		칭)		전 화 번 호			
제출자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del>)</del>	찬 성	여 부		의	견
, , , ,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하다.

- 5. 자원순환 등 환경지키기 사업
- 6.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 7.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장사업
- 8.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새마을사업 지원) 〈본문생략〉	제1조(새마을사업 지원)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 설〉	5. 자원순환 등 환경지키기 사업
6. 〈신 설〉	6.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신 설〉	7.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
	수 등 기능보강사업
8. 〈현행 제5호〉	8.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남해군 공고 제2018 - 1000호

#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 가. 이순신 순국공원 및 이순신영상관 관광객 증대
    - 1) 이순신 순국공원을 무료입장으로 전환하여 유료운영에 따른 관광객 부담을 해소하고 9월로 예정되어 있는 노량대교 준공 및 개통으로 늘어날 관광객의 방문 유도
    - 2) 공원 입장료+영상 관람료로 이원화되어있어 관광객 부담을 더욱 증대시키는 공원 입장료를 폐지하여 이순신영상관 관람객 증가 유도
- 3. 주요내용
  - 가. 순국공원 입장료 관련 조문 삭제 및 개정
    - 1) 현행 : 입장료 징수에 따른 입장료 금액, 무료입장 가능 대상자 등 규정
    - 2) 개정 : 해당조문을 삭제 및 개정하여 무료운영의 근거 마련

(영상관은 현행 유지)

###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9월 2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②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2) 연락처 : 전화 055-860-8642 ~ 4, 팩스 055-860-374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순국공원운영팀(전화 055-860-8642 ~ 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자치	법 규 명							
2. 의견 성명(명칭)					전화 :	헌 호		
제출자	주 소							
사치법 <sup>-</sup>	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의	견	
, , ,		찬성	반대		91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순신 순국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시간) 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3]

##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및 관람시간(제9조 관련)

### 1. 관람료

(단위: 원)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3,000	2,000	1,500
단 체	2,000	1,000	80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생

3. 군 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 포함)

4. 어 른 : 19세 이상인 사람

5.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2. 관람시간

전시 관람시간	영상물 상영시간
09:00 ~ 17:30	<ul><li>오전: 10시, 11시</li><li>오후: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li></ul>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생략>	제3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입장료"란 공원의 관람을 위하여	<u>1. &lt;삭제&gt;</u>
공원 안으로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	
는 요금을 말한다.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6조 <생략>	제4조 ~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료 및 매표시간) ① 공원의 입	제7조(운영시간) ① 공원의 운영시간은 0
장료는 별표 1과 같다.	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공원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1.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	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00부터 21:00까지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4월 30일까	
지는 09:00부터 17:00까지	
③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운영종료시간 3	
0분 전까지로 한다. 입장권은 당일에 한	
하여 입장할 수 있다.	
④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입장시간과 매표시간을 조	
<u>정할 수 있다.</u>	
제8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① 다음 각	<u>&lt;삭제&gt;</u>
호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	
다. 다만,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 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참 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만,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만, 장애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 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당일에 한하여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 른 수급자
- 5. 국빈 또는 외교사절단과 수행하는 사람
- 6. 초등학교 미취학 어린이 및 65세 이 상인 사람
- 7.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 8. 주민등록이 남해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 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은 입장료 50%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시

군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행위 제한) <본문 생략>

1. ~ 3. <생략>

4. 공원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단서 신설>

5. ~ 9. <생략>

[별표 1]

이순신 순국공원 입장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3,000	2,500	2,000
단 체	2,500	2,000	1,50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생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

요원 포함)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별표 2]

### 남중권발전협의회 회원 시·군(제8조 관련)

회원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진주 시·군 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별표 3]

#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및 관람시간(제9조 관련)

1. 관람료

(단위: 원)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3,000	2,000	1,500
단 체	2,000	1,000	80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생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

요원 포함)

제13조(행위 제한)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공원 내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 9.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별표 3]

# 이순신 영상관 관람료 및 관람시간(제9조 관련)

1. 관람료

(단위: 원)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개 인	3,000	2,000	1,500
단 체	2,000	1,000	800

1.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생

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중·고등학생

3. 군 인 :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

요원 포함)

4. 어 른 : 19세 이상인 사람

5.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2. 관람시간

구 분	전시 관람시간	영상물 상영시간
성수기	09:00 ~ 20:30	<ul> <li>오전: 10시, 11시</li> <li>오후: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li> <li>야간: 19시, 20시</li> </ul>
비수기	09:00 ~ 16:30	<ul> <li>오전: 10시, 11시</li> <li>오후: 13시, 14시, 15시, 16시</li> </ul>

1. 성수기 : 5월 1일 ~ 10월 31일 2. 비수기 : 11월 1일~다음연도 4월 30일 4. 어 른 : 19세 이상인 사람

5. 단 체 : 유료입장객 중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 2. 관람시간

전시 관람시간	영상물 상영시간
09:00 ~	<ul> <li>오전: 10시, 11시</li> <li>오후: 13시, 14시, 15시, 16시,</li></ul>
17:30	17시

남해군 공고 제2018 - 1012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삼동면장	주소		삼동면 동부대로 876번길 12	
소	하천명					
	위치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1419				
공사 (점용 • 사용)			폐천부 여	m²		
개요	기간	2	018. 9.	4. ~ 2023. 9.	3.	
	목적 및 사유	버스승강장 설	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남해군 공고 제2018 - 1020호

##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4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2. 개정이유
  -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포함
  - O 면 종합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항 신설·개정, 불합리한 조항 삭제
- 3. 주요내용
  - O 조례 제명 변경
  - O 면 종합복지회관 명칭과 위치 명시(제2조)
  - O 복지회관의 관리 주체(제3조)
  - O 복지회관 운영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제4조~제7조)
  - 복지회관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제9조~제13조)
  - O 별지1호 서식 변경 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명시
- 4.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19,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실
- 연락처 : 전화 055-860-3803, 팩스 860-3882,

e-mail: skynamhae@korea.kr

###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정책팀(860-380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	견 >	터 테	之	서				
1. 자치	법 규	명		남해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조례		
2. 의견	성명(	(명칭)		전 화 번 호				-			
제출자	주	소									
자치법-	규야 1	기호	찬 성 여 부			의			견		
7 1 7 1 E	11 12 3	0	찬성	반대		의			- T.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해군 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정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면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및 위치) 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관리주체) ① 면장은 복지회관을 관리·운영한다.
  - ② 면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복지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性) 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이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면 복지회관 관리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소관사무) 위원회는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 활용방안
  - 2. 복지회관 시설별 사용료 결정
  - 3. 그 밖에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위원직 사퇴를 희망할 때
  - 2. 그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3. 위원이 해외출장·질병·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사유를 통보하고 서면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이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1. 주민복지활동을 위한 다목적 시설
  - 2. 경로당
  - 3. 회의실(강당)
  - 4. 프로그램실

- 5. 목욕탕
- 6. 건강관리실
- 7. 이 미용업
- 8. 정보센터
-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설
- ② 복지회관은 복지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면의 종합복지센터로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의 결정) 복지회관의 시설별 사용료는 매년도 말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공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의 수가에 따른다.
- 제11조(사용허가)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면장에 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2조(사용료 납부와 반환) ① 복지회관의 시설 사용을 허가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제9조에 따라 공고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경우 : 전액
  - 2. 면장이 공익상의 이유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 전액
  -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70
-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복지회 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 2.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는 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4조(사용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 2. 면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 결정을 하였을 때
  - 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회관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양도금지) 사용자는 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 제16조(지도감독) ① 면장은 복지회관 관리위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1> 제2조

## 남해군 면 복지회관 위치

구 분	위 치	刊	고
이동면복지회관	남해군 이동면 무림로68번길 10		
삼동면복지회관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830		
미조면복지회관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65		
남면복지회관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78-10		
남면복지회관 목욕탕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 778-12		
서면복지회관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2647		
고현면복지회관	남해군 고현면 탑동로 75-9		
설천면복지회관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674		
설천면복지회관 목욕탕	남해군 설천면 설천로 676-6		
창선면복지회관	남해군 창선면 옥천로 7		

<별 자	[] 제1호 서	식> 제7조	회	의	록	
Ş	일 시				장 소	
	제 목					
안 건	내 용					
	주					
	요					
	심 의					
	크 안					
	건					첨부 : 회의록
	의					
	결					
	내 용					
	Н	위원장			<b>=</b>	
		위 원			기 사	
	명	위 원			항	

<별지 제2호서식> 제10조 사용허가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신	주 소							
전 청	직장·단체명			전.	화번호			
인	성명 또는			· –	등록번호 낭등록번호)			
λl	대표자 용 기 간	20	년	월	일	시부터		
	7 / 신	20	년	월	일	시까지		
사용	·시설구분				참가인원	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역							
사용	·료산출액							
제10조	가 같이 남해 드의 규정에 I I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	표자)		(인	)		
○○읍·면장 귀하								
<ul> <li>'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gt;</li> <li>'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종합사회복지관 사용 신청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고유시별번호의 처리)</li> <li>'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사업자등록증 등에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문서 보존기한을 따름</li> <li>'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li> <li>□ 동의합니다</li> </ul>								

### <별지 제3호서식>제13조

##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주소:

성명:

직업(단체명):

- 1. 사용 시설명 :
- 2. 사용목적:
- 3. 사용시간:
- 4. 감면사유(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읍·면 종합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면장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8 - 1026호

## 재난관리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내 해안가 주요지점에 『재난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알리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남해군청 안전총괄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0일

### 남 해 군 수

#### 1.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 O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2.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자연재해의 효율적인 대처를 통한 군민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군내 해안가 주요 지역에 『재난관리용 CCTV』설치사업 추진

- 나. 행정예고 기간 : 2018. 9. 10~2018. 10. 1(21일간)
- 다. 행정예고 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 남해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라. 설치장소 : 아래 참조
- 마. 촬영범위 및 시간: 카메라 설치지 100M 이내, 연중 24시간
- 바. 운영관리 : 남해군 안전총괄과
- 사. 사업내용 : CCTV 9개소 신설, 관제시스템 1식 구축

### O 재난관리용 CCTV 설치사업 대상지

લે મો	사리 이리	CCTV	· 신설	비고
연번	설치 위치	회전형	고정형	H 1/
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64-10 일원 (은점지구)	1	1	
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020-4 일원 (대지포지구)	1	1	
3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 266-11 일원 (지족3지구)	1	1	
4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556-3 일원 (초전지구)	1		
5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632-15 일원 (미조지구)	1		
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535-16 일원 (두곡지구)	1	1	
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임포리 1173-33 일원 (사촌지구)	1		
8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 439-41 일원 (노량지구)	1	1	
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582-2 일원 (장포지구)	1	1	
	합 계	9	6	

### 4.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 안전총괄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8. 10. 1.(월)까지

나. 제출(문의)처 : 남해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55-860-3424)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O 우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안전총괄과(우 52425)

O FAX: 055-860-3727

라. 기재사항

O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의견 제출서									
행정예고명 재난관리용 CCTV 설치사업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	I					생년월일		
의신 세찰자	주 소	1					전화번호		
설치예정 위	치	,		S	리견제·	출 내용	3		
재난관리	l용 CCT	W 설	치사업과	관련하¢	여 위와	같이 9	의견을 제	출합니다.	
		2	2018년	9월	일				
				-11 -> ·1			/ - 1	nd mi Ab	
				제 출 자			(서	명 또는 인)	
남해	군수 :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8 - 1031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곽창0	주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1번? 28-22			
소하· 	천명		아산천					
	위치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435-4	1				
공사 (점용 • 사용)	면적	폐천부지(廢川! 2㎡ 예상 면적				m²		
개요	기간	2018. 9. 7. ~ 2019. 7. 31.						
	목적 및 사유	창고시설 배수로	설치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남해군 공고 제2018 - 1040호

###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1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 2. 제안 이유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 내용
  - 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안 제9조)
  - 4. 의견제출
  - 가. 의견제출기간 : 2018년 10월 1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②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75, 팩스 055-860-3739
-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경관건축팀(전화 055-860-3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성명('	명칭)				전화번호	
제출자	주	소			'		
기위비교이 기수			찬성	여부	의		견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	반대		7	신	

「행정절차법」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리적 또는 심리적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3. 공공의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 4. 지역주민들의 교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공원 및 녹지 등의 휴게 시설 등을 배치하여, 주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5. 조성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유지·관리로 범죄예방의 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 제4조(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 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성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7조(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 할 수 있다.
  -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개선사업
  -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시범마을 조성사업
  -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 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남해군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8 - 1041호

##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공사완료 공고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41번지 일원에 조성된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에 대하여 폰드 확장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3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1341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 군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 명칭 :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 조성사업
- 3. 사업의 면적
  - 면적 : 1,331,102.0 m²
  - 규모

시 설	면 적(m²)	비고
합계	1,331,102.0	
체육시설	313,344.0	
건축시설	35,116.0	
공공시설	116,560.8	
녹지시설	866,081.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시	행자의	섯명	민	주소
-------------------	---	-----	-----	----	---	----

○ 성명 : (주)사우스케이프 대표이사 정형진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선로 1545

#### 5.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06월

남해군 공고 제2018 - 1047호

#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13일

### 남 해 군 수

- 1. 사업의 위치
  - 남해군 남해읍 차산리 643-4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군관리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 명칭 :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
-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1,468.6 m²
  - 〇 규모: L=60m, B=10.0~30.0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남해군수(담당부서:문화관광과)
  - 주소 :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

-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6개월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등의 세목조서: 붙임 참조
- 7. 관계도서: 실음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055-860-3415) 비치
- 8. 공람기간
-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사업인정 의견청취 공고 : 게시판 공고 익일로부터 14일간

##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면적	(m²)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비고
1	남해읍 차산리	643-4	잡	1,370.6	1,370.6	남해군							
2	"	821-1	도	7.0	7.0	남해군							
3	"	822-1	도	16.0	16.0	김*민	남해군 남해읍 ***						
4	"	823-1	도	22.0	22.0	이*일	남해군 남해읍 ***						
5	"	825-3	도	53.0	53.0	김*욱	남해군 남해읍 ***						
	합 계	5필지		1,468.6	1,468.6								

[붙임	2]	의견서
-----	----	-----

의 견 서

사업명	남해문화체육센터 제1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자	남해군수			
의견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의선제출사	주소	전화번호		
제출의견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